

■ 치과 칼럼

# 치료 시기 놓치기 쉬운 잇몸질환

잇몸질환의 치료시기를 왜 놓치기 쉬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 잇몸질환이 심한 상태에서 오신 분들께 왜 이렇게 치료 시기가 늦어졌는지 여쭙보면 잇몸이 붓고 아프다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곤 했는데 이번엔 오래가서 내원하게 되었다는 대답을 종종 듣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막상 임상검사와 방사선 검사를 해보면, 치주질환이 심하게 진행되어 발치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치가 심해져서 치통이 있다거나, 이가 마모되어 찬물에 쉽게 시린 증상을 느끼게 되는 경우와 다르게 잇몸질환의 신호는 쉽게 간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호로는 양치질을 할 때 잇몸 출혈, 붉게 부어 있고 내려간 잇몸, 지속적인 입냄새, 흔들리거나 벌어진 치아, 예전과 달라진 교합, 그리고 헐거워진 틀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치주질환의 초기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고, 치아가 너무 흔들려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즉각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초기 치주염은 약간 육신거리거나, 이를 닦을 때 출혈이 조금 있다거나 하는 정도의 증상을 보입니다. 이마저도 첫솔질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증상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치주질환이 갖는 '주기성'도 늦어진 치료의 원인이 됩니다. 휴지기와 악화기가 반복되는 주기성에 의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악화기에는 결합 조직 부착, 골소실 등이 일어나서 잇몸이 육신거리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면 휴지기로 들어가서 염증성 반응의 감소가 일어나 아픈 게 가라앉고 골소실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다시 악화기로 들어가면 잇몸 통증의 기간이 좀 더 길어지고 통증의 세기도 조금 더 강해집니다.

이러한 주기성이 수차례, 수년에 걸쳐 반복 되는 동안 치주질환은 점점 악화 됩니다. 휴지기 동안 잇몸의 불편한 증상이 경감되는데, 이때 잇몸이 완전히 나왔다고 착각하게 되고,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습

니다. 또한 잇몸의 색깔도 잇몸의 염증을 자각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잇몸은 원래 붉다는 생각에 염증이 있다는 것을 지나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심한 치주질환의 치주낭 면적을 펼쳐보면 손바닥의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피부에 이러한 크기의 염증이 보이면 누구든 심각하게 생각하고 당장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사실 치아 주위의 간강한 잇몸의 색깔은 옅은 분홍색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잇몸의 색깔과 모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진다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주질환을 노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인식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원인입니다. 치주질환은 노화 과정이 아닙니다. 치주질환은 유전적인 요소와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발생합니다.

진행된 치주질환은 완전히 회복시키기 어려우므로 조기에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치주질환이 심하게 진행되어 살릴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빨리 발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방치되면 인접 치아의 치조골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살릴 수 없는 치아는 바로 발치를 하면 인접 치아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두어 인접치아까지 위태롭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또 치주질환을 오래 앓다가 발치된 부위는 치조골 파괴가 심해 차후 이어지는 치료인 임플란트 치료를 복잡하고 힘들게 합니다.

치주질환은 한번의 치료 혹은 어떤 약물로 예방할 수 있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필요한 치료를 받고, 매일매일 올바른 구강관리를 꾸준히 실행해야 합니다.

웰컴치과그룹  
이주영 원장  
(로마린다 치과 졸업)

Korea Town: (213) 381-2827  
Irvine: (714) 838-2875  
Fullerton: (714) 552-5373



■ 법률 칼럼

# 취업이민과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미연방 노동부 (U.S. Labor Department)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적정임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연방 노동부는 신청자의 직위 (job title), 학력 그리고 경력 (Job Experience) 등을 고려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직위 (Job title/position)에 적절한 적정임금을 책정합니다. 이때 결정된 적정임금은 이민청원서 (I-140)의 승인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스폰서 회사는 적정임금을 지불할 만한 재정적인 능력 (Ability to Pay)이 노동 승인서 (L/C)가 접수되는 시점부터 영주권 심사가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래야 I-140 청원서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회사는 영주권 신청 고용인이 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이 적정임금만큼의 급여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영주권 신청인이 취업비자 등으로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영주권 승인 전에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고용주는 적정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정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회사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민을 고려하고 계신 신청인들은 스폰서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이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미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취업 이민 신청자 분들이 이 간단한 절차를 무시하고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검토하지 않으시고 이민을 진행하시다가 낭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스폰서 회사의 세금보고서를 미리 검토해서 그 자격 여부를 미리 체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재정 능력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스폰서회사의 순이익 (Net Income)이나 순자산 (Net Asset)이 책정된 적정임금보다 높으면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2) 취업이민 신청자가 취업비자 등으로 이미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이미 그 적정임금 수준의 봉급을 받고 계시다면 그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고학력을 요구하는 2순위 직종의 적정임금 수준이 3순위보다 높습니다. 그러므로 2순위 이상의 취업 스폰서가 되는 회사는 회사 재정 능력이 상당히 높아야 합니다.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나 학사와 그 전공 분야의 5년 경력을 가지고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분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3순위의 취업이민의 경우도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기 전에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노동청이 적정임금 결정 시에 학사의 경우도 터무니 없이 높게 적정임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우리가족 행복지킴이 캘코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Samuel Lee

CA Lic# OJ08982  
Cell: 562.756.6807  
samuel@calkor.com

생명보험, 은퇴연금, 메디케어

상기 설명된 특약에 관한 내용은 보험사별 지급 규정과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받는 보상금의 계산은 각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 받을 수 있고 지급에 따른 세금 및 법률에 관한 조건은 각 분야의 전문인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각 보험사 별 지급 방식과 상세한 내용은 에이전트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년 Term〉							〈30년 Term〉						
나이	30만		50만		1백만		나이	30만		50만		1백만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30세	\$15	17	19	23	30	36	30세	\$21	24	29	35	49	60
40세	21	24	29	33	49	57	40세	31	37	45	56	81	101
50세	41	54	64	83	118	152	50세	71	95	104	135	198	262

\*Best Rate 월 보험료 / 단위 \$

암, 심장마비, 뇌졸중, 치매 등의 질병에 걸려 그로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생명보험입니다

**해당되는 질병으로 부터 본인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대상**

1. Critical Illness (중대질병) 특약  
심장마비, 뇌졸중, 침윤성암, 말기 신부전증, 주요 장기이식, 전신마비, 실명, 루게릭병 (근육위축증)
2. Chronic Illness (중증 만성질환) 특약  
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6ADL\* 중 2가지 이상의 행동을 할 수 없을시, 혹은 중증 인지능력 장애가 왔을 시 (예: 치매, 알츠하이머) 6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이동하기, 목욕하기, 옷 입기, 식사하기, 용변보기, 배변조절
3. Terminal Illness (말기질환)  
의사로부터 2년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시한부 진단을 받을 시

2015년 당시 54세 남성  
40만불 생명보험 가입  
다음 해 10월에  
갑상선암 판정 후 수술받음  
특약을 통해 Claim한 후  
\$231,816을 보상받음  
2019 현재 현재,  
건강한 삶 유지

**OC 714.376.1871** 7342 Orangethorpe Ave. #C103, Buena Park, CA 90621  
**LA 213.387.5000** 3200 Wilshire Blvd. #1700, South Tower, LA, CA90010